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7. 18 화순군수
나. 회부일자 : '96. 7. 19
다. 상정일자 : '96. 7. 22 (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병일

나. 제안이유

-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수회관의 소재지 동복면장에게 전수회관의 관리운영업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며,
-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업무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관리 책임제 시행규정 제10조에 의거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읍면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

다. 주요내용

-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의 읍면위임 및 삭제 (안 제2조)
 - 한천농악전수회관 관리운영 동복면에 위임 (신설)
 -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란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개정안은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향토문화재의 관리업무가 사무위임조례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관리 책임제 시행 규정에 중복되어 있어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부 :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安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7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 안 이 유

-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업무는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시행규정 제10조에 읍면에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므로 읍면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
-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에 신축한 한천농악전수회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소재지인 동복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개 정 근 거

-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시행규정 제10조
- 지방자치법 95조 및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

3. 주 요 골 자

- 문화공보실 소관
 - (2항)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 삭제
 - (3항) 한천농악 전수회관의 관리 운영 신설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별표) 권한 위임중 문화공보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
문화공보실	1. 공연신고 2. 삭 제 3. 한천농악전수 회관관리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연법 제14조 제2항 ◦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화순군한천농악전수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	읍 면 동 복 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실과소명	현		기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위임기관	근거 및 적용법률	
문화체육 공보실	1. 공연신고 2.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연법 제14조 2항 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제95조 제1항 	유플 유플 면 면	1. (생 략) 2. (삭 제)	신설 동 복면
				3. 한천농악전수 회관 관리운영	○ 지방자치법 95조 및 화순군한천농악전수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

(신설)